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6. 20(목) 10:00

제25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건소 위생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546호
- 나. 제출자 : 이인식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4. 5. 28.
- 라. 회부일자 : 2024. 5. 28.

2. 제안이유

금천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 다.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및 조직 구성 등(안 제5조 및 제6조)
- 라.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예산 지원 및 위탁(안 제7조 및 제8조)
- 마. 센터의 운영평가 및 지도·감독(안 제9조 및 제10조)

4.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12조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급식 시설에서 영양사 없이 급식이 제공되는 상황에서 급식시설의 위생과 영양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규모 급식 시설에 대한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는 본 제정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 안 제4조에서는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수행업무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5조에서는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에 대해,

- 안 제6조에서는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조직 구성에 대해,
 - 안 제7조에서는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및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8조에서는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9조에서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성과에 대해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함.
 - 안 제10조에서는 센터의 지도·감독에 대해 규정함.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식소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부터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중 어린이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 또는 사립유치원과 상시 1회 급식인원이 50명 미만인 아동복지시설 등은 법에 따라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어린이 급식소 중 학교의 급식소를 제외한 나머지 급식소는 상시 1회 100명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으며¹⁾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 급식소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영양사 고용 등의 특례) ① 「식품위생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관리되는 집단급식소 중 상시 1회 100명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집단급식소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 2. 6., 2014. 1. 28.>

(어린이 100인 미만)에 영양사를 둔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등록은 재량사항이며,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회원으로 관리됨.

-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특히 2011.11. 1 최초 위탁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와 금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²⁾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7조 제2항은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규정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들의 생활 안정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각 센터는 관리 대상이 상이할 뿐, 안전하고 영양이 확보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시설의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업무의 특성이 동일하므로 통합운영을 통해 상호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다만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수탁자에 대한 지도·점검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중 12개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본 제정 조례안은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관계법령 1부.

2.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 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2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4. 1. 28., 2020. 12. 29.>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 삭제 <2023. 8. 8.>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4. 1. 28., 2023. 8. 8.>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4. 1. 28., 2023. 8. 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2. 27.] [대통령령 제34260호, 2024. 2. 27., 타법개정]

제12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개정 2015. 1. 28., 2021. 12. 14.>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2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도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위탁업체 :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최초 위탁일 : 2011. 11. 1(상명대 산학협력단은 '21. 1. 1. ~ '23. 12. 31. 계약만료 후 재위탁)
- 예산액 : 575백만원(국비30%, 시비35%, 구비35%)
- 위탁사유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소규모 어린이급식소,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함
 -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지원 업무는 2024. 7월부터 시행 예정임.
- 위탁내용 : 급식소 순회방문지도, 대상별 교육, 정보 제공, 급식소 컨설팅, 특화사업 등 지원업무
- 추진성과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실적

(`24. 5월 기준)

구 분	사업대상 수(개소)	등록수(개소)	등록률(%)
2023년	147	147	100
2024년	140	140	100

- 등록 급식소 지도 및 지원실적

(`24. 5월 기준)

구 분	위생·안전관리	영양관리	방문교육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포함)	식단 및 정보 제공
2023년	714회	373회	1,378회	3회	216건
2024년	219회	56회	307회	0	80건